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시보에 공고토록 하여 널리 알려 부작용이 없도록 하고자 함. 공고규정은 사무관리규정에 근거하고 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 또는 같은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증명

별표 제2호 분야별 수수료의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 중 “마. 석유판매업 등록(1종)”을 “마. 석유판매업 등록(2종)”으로 하고, 마목의 “(1)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란 다음에 “(2)부생연료유판매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수수료 징수대상사무	단위	금액	근거법령
(2) 부생연료유판매소	1건	20,000원	석유사업법 제31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①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84조의 2의 규정

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3항 및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
- 3. 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 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⑩제3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 3.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특별시·광역시지역은 3천만원 이하)의 재산취득·처분
- 4.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p>가. 특별시·광역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 (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p> <p>나. 일반 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p> <p>다. 군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p> <p>제11조제1항중 “행정재산은”을 “행정재산·보존재산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p> <p>제12조의 제목“(사용허가의 제한)”을“(사용·수익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를 삭제한다.</p> <p>제13조의 제목“(사용허가 기간)”을“(사용·수익허가 기간)”으로 하고, 동조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으로,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로 한다.</p> <p>제15조의 제목“(사용허가부의 비치)”를“(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동조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행정·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로 한다.</p> <p>제20조의2제3호중 “제29조”를 “제2조”로 하며,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 안의 공유재산</p> <p>제2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6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7.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개발 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p>	<p>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p> <p>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갑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제23조제1항중 “1000분의 50”을 “1000분의 50 이상”으로, “1000분의 25”를 “1000분의 25 이상”으로, “1000분의 40”을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1000분의 10”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1호중 “1000분의 10”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며, 동조동항제2호중 “1000분의 50”을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1000분의 40”을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1000분의 25”를 “1000분의 25 이상”으로, “1000분의 15”를 “1000분의 15 이상”으로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하고, “1000분의 10”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p> <p>제23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p> <p>제23조의3중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로 하며 동조제1호가목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으로 한다.</p> <p>제25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②2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상업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분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분은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p> <p>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25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100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
--	---

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으로서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시에 유리한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제1항·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서울특별시금고은행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산출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외현금으로 관리하되,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제6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예를 준용한다. 다만, 전세금의 이자수입은 시 수입으로 한다.

⑤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하는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되어 전세금을 반환함에 있어 그 귀책사유가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이하 "전세자"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사용료·대부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1. 중도해지로 인하여 예금이자율이 변경되어 전세금의 중도해지 이자가 전세금 반환예정일까지의 만기이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차액을 전세자가 납부한다.
2. 전세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산금액을 전세금 반환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세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대부료 또는 사용

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와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이 제23조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 이자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변상금의 청문등) ①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전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제3항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하고, 동조제5항제3호중 "(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을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 내의 토지포함)"으로 하며, 동조동항동호 단서중 "매각"을 "분할매각"으로 하며, 동조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합의회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